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



2024년 11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40 호

## 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② 업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2세로 하고,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0조의 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제4항을 신설한다.

- ③ 업무직근로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정기호봉 승급 시기는 매월 1일자로 하되 1일자 채용자를 포함하여 승급한다. 단, 2020년 이전 입사자는 해당 입사월 기준 매분기 종료 월의 익

월(1월, 4월, 7월 10월) 1일자로 한다.

④ 업무직 근로자가 만 61세 및 만 62세에 해당하는 나이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호봉으로 정정한다. 단, 해당시점 당시 호봉이 다음 각호의 호봉 미만인 경우 본래 호봉으로 한다.

1. 만 61세: 업무직 5호봉

2. 만 62세: 업무직 4호봉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 3 9 0 - 7 6 4 1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고용기간) ① (생략)</p> <p>② 업무직근로자의 정년은 <u>만 60세</u>로 하고,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12월31일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고용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만 62세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0조의 2(호봉획정과 승급)</p> <p>③ 업무직 근로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정기호봉 승급 시기는 <u>년 4회</u> 매분기 종료 월의 익월 1일자로 승급한다.</p>	<p>제30조의 2(호봉획정과 승급)</p> <p>③ ----- -----, -- ----- <u>매월 1일자로</u> 하되 1일자 채용자를 포함하여 승급한다. 단, 2020년 이전 입사자는 해당 입사월 기준 매분기 종료 월의 익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일자로 한다.</p>
<p>④ (신설)</p>	<p>④ <u>업무직 근로자가 만 61세 및 만 62세에 해당하는 나이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호봉으로 정정한다. 단, 해당시점 당시 호봉이 다음 각호의 호봉 미만인 경우 본래 호봉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만 61세: 업무직 5호봉</u> 2. <u>만 62세: 업무직 4호봉</u></p>